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7032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 03. 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2. 24

<https://www.miraenenGLISH.co.kr/Home>

[미래엔영어]

정 보 공 개 서

[(주)미래엔에듀플러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미래엔에듀플러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2086-050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2086-059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영어사업단 02-2086-055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미래엔에듀플 리스	미래엔영어 외 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5. 11. 10.	2005. 11. 11.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법인등록번호	110111-3339846	사업자등록번호	105-86-8551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영환	미래엔영어 외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신광수	미래엔영어 외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권혁춘	미래엔영어 외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한범석	미래엔영어 외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배수영	미래엔영어 외1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13층(사당동, 서송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02)2086-0505	02-2086-059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모기업	(주)미래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광수	1800-8890	02-541-8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미래엔 계열회사	(주)미래엔에듀케어	아담리츠수학 외1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2층 2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윤구	02)6933-5361	02-6933-536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의 주식을 양수함	(주)한솔플러스	한솔플러스영어 외1개	2023.03.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오피스동 10층	김영환

- ▶ 당사는 모기업 간의 당사의 주식 양수도로 인하여 당사의 모기업이 (주)한솔플러스에서 (주)미래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래엔영어	미래엔영어 브랜드의 영어학원·공부방임을 나타냄
상 호	미래엔영어 OO점	
상 표 (서비스표)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982,340	3,924,295	-941,955	7,173,332	469,201	420,587
2022년	2,498,633	3,350,316	-851,682	7,776,778	128,059	90,272
2023년	2,819,373	3,055,359	-235,985	9,585,224	874,122	615,69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021년, 2022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이전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현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영환	대표이사	2007년 12월 ~ 현재	(주)미래엔에듀플러스 대표이사	경영 의사 결정
가맹사업 관련 임원	신광수	사내이사	2023년 03월 ~ 현재	(주)미래엔에듀플러스 사내이사	경영 지원
가맹사업 관련 임원	권혁춘	사내이사	2023년 03월 ~ 현재	(주)미래엔에듀플러스 사내이사	경영 지원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한범석	사내이사	2023년 03월 ~ 현재	(주)미래엔에듀플러스 사내이사	경영 지원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배수영	감사	2023년 03월 ~ 현재	(주)미래엔에듀플러스 감사	회계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6	0	2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등록번호	업종
가맹본부	(주)미래엔에듀플러스	미래엔수학	2008. 4월~현재	수학교육	20080100751	유사
(주)미래엔 계열회사	(주)미래엔에 듀케어	아담리즈수학	2007.04 ~ 현재	수학교육	20080100632	유사
		위버지니어스	2007.04 ~ 현재	유아동교육	20080100633	유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미래엔 영어	—	—	—	—	—

-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상표 실용신안 특허 등의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 당사의 상표권은 관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미래엔영어] 가맹사업 현황

1. [미래엔영어] 을 시작한 날: 2017년 4월 1일

2. [미래엔영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한솔플러스	한솔플러스영어	김영환	2017.4.1.~2023.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오피스동 10층
(주)미래엔에듀플 러스	미래엔영어	김영환	2023.4.~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오피스동 10층 (상암동, DMC이안 상암2단지)

3. [미래엔영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미래엔영어	교육서비스	초중등대상 영어학습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 중인 [미래엔영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구분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22	1,022	없음	1,104	1,104	없음	1,236	1,236	없음
서울	123	123		85	85		88	88	
부산	60	60		69	69		80	80	
대구	54	54		57	57		73	73	
인천	75	75		67	67		73	73	
광주	22	22		31	31		31	31	
대전	22	22		25	25		28	28	
울산	27	27		25	25		26	26	
세종	5	5		6	6		7	7	
경기	278	278		371	371		406	406	
강원	10	10		12	12		16	16	
충북	32	32		36	36		49	49	
충남	63	63		67	67		78	78	
전북	47	47		50	50		50	50	
전남	46	46		37	37		43	43	
경북	43	43		45	45		48	48	
경남	96	96		101	101		117	117	
제주	19	19		20	20		23	23	

5. 최근 3년간 [미래엔영어] 가맹점 수

사업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971	191	-	140	-	1,022	+51
2022	1,022	176	-	94	0	1,104	+82
2023	1,104	193	-	61	8	1,236	+132

6. [미래엔영어]외 가맹본부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미래엔영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미래엔에듀 플러스	미래엔수학	20080100751	교육서비스	1,339/0	1,335/0	1,386/0
(주)미래엔 계열회사	(주)미래엔에듀 케어	아담리즈수학	20080100632	교육서비스	55/10	55/9	63/9
		위버지니어스	20080100633	교육서비스	15/1	14/0	11/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실제 매출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236	31,934	2,398	252,180	61,867	267	17	911곳 산정
서울	88	20,145	1,463	106,200	11,363	360	25	60곳 산정
부산	80	37,971	3,388	220,320	16,374	540	42	57곳 산정
대구	73	34,091	2,533	201,240	12,087	267	17	59곳 산정
인천	73	26,642	1,977	105,660	9,866	720	93	49곳 산정
광주	31	33,615	2,360	151,020	38,336	900	42	28곳 산정
대전	28	32,859	2,477	110,160	13,388	1,080	51	22곳 산정
울산	26	21,894	1,571	89,460	8,453	360	34	19곳 산정
세종	7	25,092	4,871	58,500	8,393	8,820	2,239	5곳 산정
경기	406	33,147	2,389	252,180	29,883	360	17	294곳 산정
강원	16	17,607	1,301	28,080	5,255	4,320	823	9곳 산정
충북	49	60,250	4,928	243,720	61,867	4,140	272	38곳 산정
충남	78	35,923	3,049	150,120	21,201	900	129	57곳 산정
전북	50	22,825	1,475	94,860	4,907	540	25	39곳 산정
전남	43	36,411	2,312	105,840	12,565	3,060	289	40곳 산정
경북	48	24,390	1,925	71,529	13,342	1,440	366	37곳 산정
경남	117	27,423	2,284	113,220	19,236	1,620	76	84곳 산정
제주	23	28,770	2,212	61,020	7,082	2,340	594	14곳 산정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위 매출액은 미래엔영어 가맹점 **1,236개** 중 매출 발생 가맹점 **911개에 한하여**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으로 배송된 교재의 출고수를 기준으로 각 가맹사업자별 연간 평균매출을 추정한 것입니다.

<매출액 = 가맹점에서 지도하는 회원수 * (교육비+교재비, ₩300,000)>

▶ 매출 상한과 하한은 **매출이 발생 한 6개월 초과 운영 된 가맹점에 한하여** 연간 매출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 한 것입니다.(매출발생 0 가맹점 제외)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미래엔영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236곳	1,25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미래엔영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본부(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역본부(지사)의 권한 : 가맹계약서 [제2조 3항]

“지역본부[지사]”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의 범위내에서 가맹점을 모집•개설•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자를 말한다

2) 지역본부 현황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 종로구/중구	마포서대문용산지사	서울 마포구 동교로 67 (망원동, 삼운빌딩)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최은경	02-393-4111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서울특별시 은평구 / 고양 덕양구	은평덕양지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22 (동산동)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효민	02-371-2109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초구/강남구	강남서초송파지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22 (동산동)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선주	031-607-0505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과천시	관악동작지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34-1 (노랑진동)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오유미	02-825-3885	1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노원구/강북구/도 봉구	노원강북지사	서울 강북구 번동 460-50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동인	02-998-7435	1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포천시/연천군	의정부양주지사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219번길 17 (용현동, 경남프라자2) 3층 3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유미경	031-853-7235	1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고양시 고양일산서구/고양일산동 구/파주시	일산파주지사	경기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31 (봉일천리)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강은정	(비공개)	1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용인시	용인지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416-1용구프라자 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규영	031-283-0585	4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38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효정	031-217-2237	3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11.1~2025.2.28	○	○	X
경기도 부천시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삼작로 298 (도당동)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신서은	031-676-1358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안산시흥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원곡동) 벽산상가 209~21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란구	031-475-0943	4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안양군포지사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1-1 청진빌딩 807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봉선	031-421-1105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오산시/안성시/ 평택시	오산평택안성지사	경기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15 301동 3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은정	(비공개)	3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5.1~2025.2.28	○	○	X
경기도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 양평군	구리남양주시사	경기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공리, 태평아파트) 상가동 5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성희	031-511-6393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중원구 / 성남시 수정구 / 광주시 / 여주시 / 이천시	성남광주이천시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12 (야탑동, 금탑프라자) 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창현	031-633-3405	2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기도 화성시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2길 85 (산척동, 그린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주현아	(비공개)	2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강화/중구/동 구/옹진군	인천서구계양지사	인천 계양구 용종로 2 (계산동, 계산프라자) 308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반준영	(비공개)	3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인천광역시 부평구/남동구/연수구/미 추홀구	인천남부지사	인천 부평구 산곡동 233-4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종열	(비공개)	2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5.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지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3 (마산동, 가람프라자) 5층 5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소연	031-989-6673	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횡성군 / 영월군 / 원주시 / 홍천군 / 평창군	원주지사	강원 원주시 늘품로 8 (단구동) 상가동 2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신경민	(비공개)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제주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89-1 (이도1동)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경표	064-724-2100	1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음성군 / 단양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청주충주지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64 (우암동) 3층388-73 2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유제완	043-236-0203	4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충남 서산시 / 당진시 / 보령시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서천군 / 청양군 / 세종시 /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부여군	세종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석림1로 68 (석림동, 청운타워) 3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안선희	041-665-3121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충남 천안시/아산시	천안아산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32-1 (구성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미영	041-556-9905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대전광역시	대전지사	대전 중구 대종로593번길 14 (선화동, 세진빌딩) 2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현국	042-221-2254	2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전북 전주시 / 완주군 / 정읍시 / 남원시 / 고창군 / 순창군 / 임실군 / 무주군 / 장수군 / 진안군 / 익산시 /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전북지사	전북 남원시 동림로 39 (향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민호	(비공개)	4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5.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곡성군 / 구례군 / 장흥군 / 고흥군 / 보성군 / 목포시 / 나주시 / 무안군 / 함평군 / 해남군 / 영광군 / 완도군 / 신안군 / 강진군 / 진도군 / 영암군 / 동구 / 남구 / 화순군 / 서구 / 장성군 / 담양군	전남서부광주남부지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3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임성진	061-282-0501		3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광주 북구/광산구	광주북부지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0 (운남동)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은하	(비공개)		1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북 경주시 / 포항시 / 영천시 / 청도군	경주포항지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153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전태	054-772-0579		1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북 구미시 / 김천시 / 상주시 / 영덕군 / 울진군 / 군위군 / 칠곡군 / 고령군 / 성주군 / 의성군 / 안동시 / 영주시 / 문경시 / 청송군 / 영양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릉군	구미안동지사	경북 구미시 검성로 103-7 (황상동, 금봉타운1차)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신상환	054-475-3773		2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남 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시 의창구 / 창원시 성산구 / 창원시 진해구	창원거제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53번길 3 (용호동, 창원오피스텔) 41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혜선	055-282-9996		4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경남 진주시/사천시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 원구/ 함안군/창녕군/합천군 남해군/산청군/하동군/의 령군	진주마산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석동, 진해석동 우림필름) 113동 1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영진	055-762-7436		3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남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김해양산지사	경남 김해시 두곡로 15 (삼계동, 삼계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13동 6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안미옥	(비공개)	1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울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 중구 함월22길 11 (성안동)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병철	052-243-0757	2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대구광역시 북구/서구/달서구/달성군	대구서지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2길 2 (동서리) 햇살재가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경미	053-851-2004	4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대구광역시 수성구/남구/중구/동구 경남거창군/함양군/경산시	대구동지사	대구 동구 동촌로42길 19 (방촌동)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애진	(비공개)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5.1~2025.2.28	○	○	X
부산광역시 수영구/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남구	부산동서지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95번길 7 (사직동)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임성근	051-502-5205	2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부산광역시 사상구/사하구 서구/중구/동구 영도구/강서구/북구	부산사하지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33(명지동, 엘크루 블루오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예혜진	(비공개)	2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부산광역시 기장군/금정구/해운대구	부산해운대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36 (용원동, 부산신항8단지부영아파트) 806동 9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길영	(비공개)	1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5.1~2025.2.28	○	○	X
강동구/하남시	강동하남지사	서울 강동구 상암로12길 20(천호동, 유원아파트)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허복득	(비공개)	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양천구/강서구	강서양천지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동, 747) 마곡 747타워 8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진희	02-2665-6807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2.1~2025.2.28	○	○	X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전남동부지사	전남 순천시 도장길 36 (연향동, 영어교실)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문경	(비공개)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강원도 강릉시 / 고성군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태백시 / 정선군	강릉동해지사	강원 강릉시 하평5길 50 (포남동)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수정	033-522-4466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3.1~2025.2.28	○	○	X

10. 2023년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본사	지사		
광고	소계	2023년	17,293	17,293			
	온라인	연중, 상시					보도자료, SNS 등
	기타						
판촉	소계	2023년	244,502	244,502			
	지사시책	분기, 연간					우수지사 지원 등
	기타	연중, 상시					현장 홍보 지원 등
합계			261,795	261,795			

10.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맹금 등을 당사에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아래와 같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미래엔에듀플러스		가맹본부
보험금 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2개월		
보장범위 (보장금액)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가맹금 250만원(VAT포함)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산정 ② 가맹본부 경유 ③ 보험회사 접수	④ 보험회사 조사 ⑤ 지급여부 결정 ⑥ 보험금 지급	약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래엔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점포의 임대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더라도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피해보상보험보장범위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않음	확정 금액 (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않음	해당사항 없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1,5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전 계약 해지	▶ 영업개시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영업개시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신입교육 훈련비	30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전 계약 해지	▶ 교육개시전 :전액 반환 ▶ 교육개시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초도물품비	200	계약체결일	물품수령 이전 계약 해지	▶ 수령전 : 전액 반환 ▶ 수령후 : 반환하지않음(소모성)	
총계	2,000				

2) 가맹유치를 위하여 프로모션 등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가맹금을 임의로 인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당사에서는 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최초 가맹금 등을 당사에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000
가입비	1,500
교육비	300
초도물품비	200
(현금)보증금	0

5)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단가	금액 (책상9개/ 15평기준)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 계	-	-	6,976 ~ 8,759	465 ~ 583	-		-
필수 설비	MP3CD 어학기	협력업체 이용 또는 자율선택	45 ~ 75	405 ~ 675	27 ~ 45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협력업체: 협력업체)
	헤드셋	자율선택	5 ~ 7	45 ~ 63	3 ~ 4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어학용 책상 및 의자	협력업체 이용 또는 자율선택	64 ~ 69	576 ~ 621	38 ~ 41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태블릿PC	자율선택	200 ~ 300	400 ~ 600	26 ~ 40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학습용 (2대기준)
인테리어	자율선택	선택사항이며, 지역마다 상이함	3,750 ~ 4,500	250 ~ 300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인테리어 규정 없음
간판, 썬팅	자율선택	지역마다 상이함	1,000 ~ 1,500	66 ~ 100	계약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와 선택한 업체와 개별 협의	본사 BI 규정 준수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800	53	계약 체결후	공급 전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지역본부와 협의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 → 가맹본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 선정 → 설비 등 당사의 준수사항 완비 → 가맹본부의 개점 승인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교사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및 학원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교사	학원 강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지역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광고비	가맹본부	실비	별도협의를	광고 실시 전 전액 반환	전국광고를 시행한 경우에는 소멸되었으므로 반환 불가
	지역본부	실비	별도협의를	광고 실시 전 전액 반환	지역광고를 시행한 경우에는 소멸되었으므로 반환 불가
	각 통신사	실비	서비스 개시후	통화연결음서비스 실시 전 전액 반환	통화연결음서비스를 시행한 경우에는 사용일수 일할 계산
점포환경 개선비용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상호협의를 의한 점포환경 개선사항 발생시, 가맹사업법 제12조2 에 따라, 비용 분담을 시행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가맹본부에서 진행하는 초기 신입교육훈련비는 가맹금에 포함(1인)되어있으며, 신입교육훈련비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훈련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또한,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과 내용에 따라 훈련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상담용/비치용 교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교재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할 경우 상담용/비치용 교재를 별도로 주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차액가맹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이 중단되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사항	내 용	시기	담당
매장 청결	가맹점 내 청결상태 관리감독	필요시	지역본부(지사)
회원수 점검	가맹점 실제 운영중인 회원수와 가맹본부의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수의 일치여부	매월/필요시	지역본부(지사)
교육서비스 품질	회원(고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수시/필요시	지역본부(지사)
부정영업관리	부정한 기타 영업행위의 관리	수시/필요시	지역본부(지사)

4) 회원등록 및 교재사용 의무

신규회원 입회시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교습할 수 없습니다.

미래엔영어 전용 교재 주문시 회원별 교재 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미래엔영어 전용교재를 회원 1명당 매월 최소 1.0권(포인트)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제재사항
1회 위반시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시	홈페이지 사용 중단 및 서면 시정 요구
3회 위반시	물품 공급 중단 및 서면 시정 요구
4회 위반시	계약 해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비고
신입교육훈련비	300,000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 함

※ 단, 양수인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신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가맹본부의 가맹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미래엔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미래엔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미래엔영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선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

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미래엔영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All in one All in one listening Alphabet Phonics Easy Grammar Easy Phonics Plus Easy Phonics Grammar Fun Grammar Fun Wu Grammar Gateway Grammar Jump Grammar Start MY English Diary Phonics Fun Phonics Fun Phonics Town Power Voca Reader's Solution Reading Town30 Reading Town50 Reading Town70 Reading Town100 Reading Town130 Reading Town170(23년 출간) Story Town Talk Talk English Writing Builder 중학 영문법	당사가 지정한 교재이외의 품목을 원생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학습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장 소속 원생들에게 동일한 학습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장 소속 원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및 학습시스템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및 학습시스템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른 가맹점사업자			
비회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의 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천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교습료	150 ~ 180	통지 내지는 공고	지역별로 상이함 특강, 엘리트반 등은 수익자부담금 별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가맹본부의 독자적 수업시스템 및 교재, DB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 1:1 맞춤형 코칭수업을 하는 LAB시스템 기반의 자기주도형 초중등 영어공부방	미래엔영어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000세대 기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하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재조정 사유 발생 2. 당사 검토 3.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4.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5. 가맹점사업자 합의 6. 영업지역 변경 완료	1.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2. 합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미래엔영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솔플러스수학교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기간

- 최초 가맹 계약기간 : 1년
-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위반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스템 또는 교육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⑥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필수교육에 1회 이상 불참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정기적인 교육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⑦ 가맹본부가 정한 회원등록 및 교재사용과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⑧ 점포의 간판·썬팅 및 시설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28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교육서비스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학습시스템 및 교재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학습시스템 및 교재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복사 또는 표절하여 사용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타업소에 제공·판매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운영일수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원의 운영현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간판 등의 설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회원등록 및 교재사용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 어학시설의 설치, 개점전 교육·훈련 인허가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설비용의 지급을 개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과정 중 신입입문교육을 3개월 이내, 신입향상교육을 1년 이내에 3회차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 또는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은 포기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양도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잔여 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이때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신입교육훈련비(200,000)(VAT포함)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신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营业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 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미래엔영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학원,교습소,공부방, 개인과의, 화상영어, 학교, 서점, 도서대여점 및 이와 동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V-11 손해배상(위약금)]쪽에 나와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래엔영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법상 규정	법정공휴일 제외 영업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②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후 휴원이 가능하며,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출산,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휴원하고자할 경우, 해당일 3개월전까지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맹본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가맹사업자는 다시 개원할 시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셔야하며, 전출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재개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공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 수를 영업중단의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지역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교사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에 있는 사항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원 운영과 관련한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마케팅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가맹원의 운영현황(회원명부, 공부방운영 현황, 교재 배본 및 거래장부, 기타 제반자료)에 관한 결과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원에 출입·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가맹원을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하한 형태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과 직원 및 원생 등의 개인위생관리에 힘써 원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하고 감염된 당사자를 원생과 가맹원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게시물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원 내·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가맹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야 하며, 대리 경영인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자료의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유출된 회원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5) 정책사항 고지의 의무와 관리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는 미래엔영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업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는 정책사항을 이메일, 서면 또는 유무선의 통신수단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특히 『미래엔영어』의 홈페이지에서 정책사항을 고지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지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일 1회 이상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가 고지한 정책사항을 확인하고 대처하여야 하며, 정책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미래엔영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 등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전국 광고	상품광고	별도협의		
	상품+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지역 광고	상품광고			
	상품+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 단독광고		-	-	100%
통화연결음서비스		-	-	100%
판촉		다만,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 가능		

※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 판촉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관할 가맹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

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일수에 따라 1일 당 금삼만원(\30,000)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일당 금삼만원(\30,000)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 운영을 통해 취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교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 성립시점부터 종료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동안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 ③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개설가능여부 확인 - 담당지역 가맹본부 응대	즉시	없음
사업 상담 /상권 분석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가맹점(10개)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결정 - 희망지역 입지분석 - 입지주위 점포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임대비용
최종 협의	- 희망지역 개설승인 -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14일전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없음
가맹금 입금	- 가입비, 교육비, 초도물품비 입금	계약후 즉시	250만원
시설 설치	- 간판 및 인테리어 설치 - 어학시설 설치	계약후 즉시	실비
교육 실시	- 가맹점 신입 입문 교육 실시	해당 월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날(1박2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병행 진행
행정인허가	- 사업자등록 등의 인허가	즉시	없음
가맹점 오픈	- 가맹점 고유 아이디 발급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시설완료 포함 계약완료후 7일 이내 오픈가능	실비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예치가맹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2 규정 및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는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지사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회원 모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 합니다.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강제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유상 자문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은 무상으로 해당지역의 지사에서 진행 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코로나 지원 가맹비 면제	신규 가맹비 면제	신규 가맹시	2020년 5월~7월 (3개월)	신규 가맹비 전액 면제	
코로나 교재비 지원	교재비 본사 지원	가맹점 회원 코로나 확진시	상시	가맹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교재비 50% 지원	
코로나 판촉물 할인	판촉물 할인	구입시 할인 이벤트	4월	poppen 40% 할인 이벤트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미래엔영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간	비용 (VAT포함)	비고
신입입문교육	브랜드교육 학습시스템/교재교육 운영교육 외	1박 2일 합숙 강의 및 실습 (14시간)	300,000	필수
1차 향상교육	성공사례교육 운영노하우교육 분임토의 외	강의 및 실습 (8시간)	무료	필수
2차 향상교육		강의 및 실습 (8시간)	무료	필수
3차 향상교육		강의 및 실습 (8시간)	무료	필수
보수교육	교재 및 교육기법 외	2~3시간 강의(연8시간)	무료	필수
월례교육 (회의)	매월 공지 사항 회원 모집 교육 외	2~3시간 강의 및 실습, 토론	무료	필수
워크샵 (본사또는지사)	연간 사업방향 제시 특강 및 화합 외	1박 2일 합숙 강의 및 토론	실비	대상자 필수 비대상자 선택
성공사례교육	운영노하우 교육	강의 및 실습 (2~3시간)	무료 또는 실비	대상자 필수 비대상자 선택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 중 신입입문교육 및 신입향상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고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입입문교육은 개점후 3개월 이내에 신입향상교육은 신입입문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3회차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필수교육(월례교육/회의 및 보수교육)에 1회 이상 불참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정기적인 교육(워크샵, 성공사례교육 등)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02-2086-050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상담실(044-200-4010)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hsplus.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